

제 592 호
1977.2.22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
편집 : 문화공보관 조 용 하
전화 75 - 7834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전화 75 - 5444

시 보

차 례

◎ 조 례

- 제 1144 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로등 징수조례중
개정조례..... 3
- 제 1145 호 서울특별시 압축가스용기검사수수료 징수조례
폐지조례..... 4
- 제 1146 호 서울특별시가내공업센타조례 폐지조례..... 4
- 제 1147 호 서울특별시 시범농촌개발조성사업기금설치
조례폐지조례..... 4

◎ 규 칙

- 제 1675 호 서울특별시 압축가스용기검사수수료징수조례시행
규칙폐지규칙..... 5

(이면계속)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계	보도계장	공보계장	문화공보관	문화공보관	공람
	이	김	김	김	일

1406

◎	고	시	
	제 39 호	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결정및지적승인	5
	제 40 호	도시계획시설 (시장) 결정및지적승인	6
	제 41 호	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지적승인	7
	제 42 호	도시계획시설 (주차장) 결정및지적승인	7
◎	공	고	
	제 34 호	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 공람공고	8
	제 35 호	환지계획일부변경 공람공고	9
	제 8 호 (도봉구공고)	공인개각공고	10
◎	예	규	
	제 341 호	경찰경비부서 인사관리규정중 개정	11
	제 342 호	경찰국 정보과 기록실운영요강폐지	11
◎	정	정 (규칙제 1670 호 :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중 개정규칙)	12

조 **례**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출 인

1977년 2월 22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1144 호

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

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"하천법 제33조 제1항" 다음에 "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2"를 삽입한다.

별표중 제8호의 토석, 사력의 채취 산정기준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1977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까지의 토석 및 사력의 채취 수수료 산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◁별표▷

요 금 산 정 기 준

구 분	산 정 기 준
8. 토석, 사력의 채취	<p>1. 서울특별시의 전년도 10월말 현재의 토석, 사력 도매물가의 100분의 15, 다만 도매물가(가공비품 제외)는 공신력이 있는 조사기관의 조사에 의하고, 매년초에 당해년도에 적용할 사용료를 고시하여야 한다.</p> <p>2.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에 있어서는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
시 압축가스용기 검사수수료 징수조
례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

1977년 2월 22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145 호

서울특별시 압축가스용기 검사
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

서울특별시 압축가스용기 검사수수
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
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
시 가내공업센타조례 폐지조례를
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

1977년 2월 22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146 호

서울특별시 가내공업센타
조례 폐지조례

서울특별시 가내공업센타 조례는
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
시범농촌 개발조성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
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

1977년 2월 22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147 호

서울특별시시범농촌개발조성사업
기금설치조례 폐지조례

서울특별시 시범농촌 개발조성사업
기금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규 칙

서울특별시 압축가스용기 검사수수료
징수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
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

1977년 2월 22일

◎ 서울특별시규칙 제 1675 호

서울특별시압축가스용기검사수수료
징수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

서울특별시 압축가스용기 검사수
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
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 제 39 호

도시 계획 시설 (도로) 변경
결정 및 지적승인

1977.2.21

서울특별시장

○ 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 및 지적승인 조서

재적비 번호	구분	등급	류별	폭원	연장	기 점	종 점	비 고
성북5	기정 변경	소로	3	6	30	성북동 2-45	성북동 145-67	위치변경
도봉1	기정 변경					미아동 480-5	미아동 480-29	치 지
도봉2	기정 변경		1	10	120	월계동 68-76	월계동 52-3답	위치변경
도봉9	기정 변경		3	6	85	미아동 653-129	미아동 852-288	폐 지

재정비 번호	구분	등급	류별	목원	연장	기 점	종 점	비 고
도봉14	기정	소로	2	8	20	상계동 156-118	상계동 156-13	
"	변경	"	"	"	30	상계동 156-13	" 156-7	위치변경
도봉15	기정	"	"	4	45	수유동 269-59	수유동 270-190	
"	변경	"	"	"	"	"	"	"
도봉17	기정	"	3	6	110	미아동 773-10	미아동 779-1	
"	변경	"	"	"	"	" 300-54	" 300-31	"
도봉21	기정	"	1	10	50	수유동 273-55	수유동 273-55	
"	변경	"	"	"	"	" 앞	" 앞	"
도봉27	기정	"	3	6	70	수유동 443-2	수유동 445-37	
"	변경	"	"	"	"	"	"	"

별첨 : 도면표시와 같음.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0 호

도시 계획시설 (시장) 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시장) 을
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
였기.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
조 규정과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
관한 규정 제26조 규정에 의거

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
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
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
계인에게 보인다.

1977.2.21

서울특별시장

가. 시장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 고
신설	번동시장	도봉구 번동 54	1,938.8 평	
"	장안시장	동대문구 장안동 217-2	1,403 평	

별첨 : 도면표시와 같음.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1 호

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지적승인

1. 건설부 고시 제 139 호 (76.8.26) 및 건설부 고시 제 37 호 (76.3.27) 로 일부변경 고시된 용도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 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행정권한

가. 도시 계획 용도 지역 변경 지적 승인 조서

위임 및 의 '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에 각각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7. 2. 21

서울특별시장

변경구분	위 치	면 적 (㎡)	비 고
주거-준주거	용산구 한남동	37,500	
주거-주거전용	종로구 평창, 구기동.	1,160,000	
	용산구 이태원동	408,700	
주거-자연녹지	용산구 용산동	3,593,850	미 8 할부지
상업-자연녹지	.	73,750	

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2 호

도시 계획 시설 (주차장) 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주차장)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 인하였 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 규정과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 규정에

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7. 2. 21

서울특별시장

가. 주차장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			
구 분	위 치	면 적	비 고
신 설	성동구 중곡동 40-1,2 호	1,204㎡ (398평)	원효여객
•	성북구 정릉동 820-18,19,36 호	1,679㎡ (509평)	삼선버스
별첨 : 도면표시와 갈음 (도면생략)			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공 고</div>		제 25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물 변경요저 동법제 3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한다.	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34 호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공람공고		2.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(주택과 또는 건축과) 에 비치하고 있으며 재개발사업 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고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.	
1. 건고시 294 호 (75.8.30) 및 18 호 (75.2.8) 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인가된 옥인구역등 10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		1977.2.22 서울특별시장	
가. 공 략 내 용			
사업명칭	위 치	면 적 (㎡)	비 고
옥인구역	종로·옥인동 산3번지 일대	48,899	사업기간연기
상도제5구역	관악·상도동 123	79,917	•
봉천제1	관악·봉천1동 일대	172,073	•
봉천제2	관악·봉천동 산94	94,380	•
봉천제3	• • 101	180,255	•
봉천제4	• •	335,205	•
봉천제7	• •	176,926	•
사당제1	관악·사당동 산11번지일대	45,061	•
사당제4	• 산12	195,231	•
명륜구역	종로·명륜동3가 산3-15	98,010	•
계	10개구역	1,425,957	

나. 시행자 : 서울특별시

다.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

당초 : 인가일로 부터 2개년

변경 : 인가일로부터 81.12.30까지

라. 설계도서 및 재원조서 :

생략 (별첨)

마. 수용 또는 사용할토지 또는

건물의 조서 : 생략 (별첨)

바. 관계인의 주소, 성명 : 생략 (별첨)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35 호

환지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역촌추가, 시흥토지
구획정리 사업지구일부 토지에 대한
환지계획을 일부변경코져 토지구획
정리사업법제 55조 및 행정권한의
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 25조
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부터 14일간
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
공람 공고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
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및

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3. 서류 송달은 별도토지 소유자 및
이해 관계인에게 통보할 것이나,
미수명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
은 이 공고로 갈음한다.

1977. 2. 22

서울특별시

가. 사업명 : 역촌추가와 시흥토지
구획정리 사업

나. 변경내역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
북가좌동 일부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산동
일부

다. 필 지 수 : 5 필 지

라. 변경조서 및 도면 : 생략 (서울
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
비치)

◎도봉구공고제 8 호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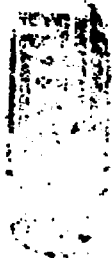


공 인 개 각 공 고

다음과 같이 당구 산하 상계제 2동장의 공인을 폐기하고 개각 사용
토록 하였기 이를 공고함.

1977. 2.

도 봉 구 청 장

- 1. 공인명 : 상계제 2동장인 및 제인
- 2. 사용개시일자 : 1977. 2. 21 09 : 30
- 3. 공인의 인영 : 다 음

등명	상 계 제 2 동 장	제 인
폐 기 인 영		
신 조 인 영		

예 규

경찰경비부서 인사관리 규정중 개정
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77.2.24

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

◎ 서울특별시에규제 341 호

경찰경비부서인사관리규정중개정
경찰경비부서 인사관리 규정중 다
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중 제1, 3, 4항을 다음과 같
이 한다.

①순위자 명부는 매년 2월 1일
현재로 1회 작성한다.

③순위자 명부의 등재순위는 개인의
승진에 관계없이 최종 경비부서
복무를 필한 년월일 순으로 하되
같은 때에는 년장자를 우선 순으로
한다.

④서울시로 전입하여 일반부서에
배치된 자(이하 타시도전입자라 한다)
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.

1. 전투경찰대, 기동대, 치안본부 상회
실 및 경찰대학에서 복무기간을 필한
자는 서울시 경비부서 복무필자로
본다.

2. 전 1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는
미필자로서 명부작성일 기준 년장자
순으로 등재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77년 2월 1일부터
적용한다.

경찰국 정보과 기록실 운영요강폐지
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77.2.24

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

◎ 서울특별시에규제 342 호

경찰국정보과기록실운영요강폐지
경찰국 정보과 기록실 운영요강
(예규 제192호 1969.4.4)은 이를
폐지한다.

부 칙

이 요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
한다.

정 정

시보 제 588 호 (77.2.7) 규칙
제 1670 호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
중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정
한다.

1977 . 2 . 22

서울특별시장

◎ 서울특별시규칙 제 1670 호

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
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2 조 (정의) 이 규칙에서 다음
각호에 기재하는 용어의 정의는
당해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1. 국 : 시장 직속의 관과 시의 국
을 말한다.

2. 국장 : 시장 직속의 관과 시의
국장을 말한다.

3. 과 : 시외 과와 담당관을 말한다.

4. 과장 : 시외 과장과 담당관을
말한다.

5. 본청 : 시청을 말한다.

6. 청, 소 : 본청 이외의 구, 출장소,
동, 공무원교육원, 산업대학, 종합운동
장건설본부, 주택건설사업소, 병원,
보건연구소, 지하철본부, 소방본부,
시민회관, 농촌지도소, 경찰서, 소방서
기타 시외 사업소를 말한다.

7. 청, 소의장 : 권호에 규정하는
청, 소의 장을 말한다.

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3 조 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)

① 지방재정법 (이하 "법"이라 한
다) 제 6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
수관, 경리관, 물품관리관, 지출원,
출납원과 그 분임자를 다음 구분에
의하여 각각 지정한다.

1. 본 청

징수관

재무국장

일반회계분임징수관

세정과장

각특별회계분임징수관

각특별회계수관국장

경리관

재무국장

분임경리관

회계과장

물품관리관

회계과장

분임물품관리관

각과장 및 담당관

지출원

회계과 지출계장

일반회계수입금출납원

세정과 과장 1계장

각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

각특별회계세입사무담당계장

세입세출의원금출납원

회계과 지출계장

물품출납원

회계과 서무계장

분임물품출납원

각과와 담당관의 주무계장

입시건도자금출납원

시장이 필요에 따라 지정

2. 청 소

가. 구. 출장소. 동

징수관

청소의장 (단, 시세는 구청장, 출장소장에 한한다.)

분임경리관

청소의장

물품관리관

청소의장

일반회계수입금출납원

세무 제 1, 2 과장, 출장소는 세무과장

각목별회계수입금출납원
분 입 지 출 원
일반회계분입수입금출납원

각목별회계 주 관 과 장
재무과장, 출장소는 총무과장
세무제 1 과 세무제 1 계장과
세무제 2 과 정리계장
출장소는 세무과 수납계장과
정리계장
동 사 무 장

각목별회계분입수입금출납원
전도자금출납원
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
물 품 출 납 원
분 입 물 품 출 납 원
임시전도자금출납원
도 급 경 비 출 납 원

각목별회계세입사무담당계장
동 사 무 장
경리계장, 출장소는 총무계장
재무과장, 출장소는 총무과장
각 실 과 장
청 소 외 장 이 필요에 따라 지정
동 사 무 장

나. 기 타 사 업 소

징 수 관
분 입 경 리 관
물 품 관 리 관
수 입 금 출 납 원
분 입 지 출 원

청 소 외 장
청 소 외 장
청 소 외 장
수납담당 3급 율류과 계장 (과제가 없
는 사업소는 수납담당계장)
경리담당 3급 율류과 계장 (과제가 없
는 사업소는 경리담당계장)

<p>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</p>	<p>경리담당 3급을류 과·계장 (과제가 없는 사업소는 경리담당계장)</p>
<p>물품출납원</p>	<p>경리과장 또는 주무과장 (과제가 없는 사업소는 경리계장 또는 주무계장)</p>
<p>분입물품출납원</p>	<p>3급을류인 각과장 또는 주무계장 (과제가 없는 사업소는 주무계장) 병원에 있어서는 약품에 한하여 약재과장</p>
<p>입시전도자금출납원</p>	<p>청소의 장이 필요에 따라 지정</p>

<p>②직제의 변경 기타 특수한 사경으로</p>	<p>부 칙</p>
<p>지출원과 현금출납원의 직위가 경하게 되는 경우와 전항의 규정과 따라 지정한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, 청·소에 있어서는 청·소의 장이 이를 분리지정하거나 따로 임명하여야 한다.</p>	<p>1.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2. (경과규정) 이 규칙 시행전에 행정기구 (대통령령 제 8238 : 76. 12.30) 의 개편에 따라 변경된 기관 칭호 및 지정된 관직은 이 규칙에 의하여 변경 및 지정된 것으로 본다.</p>